

합성부터 시작한 우리 화섬산업(8)

3.3. 수출용 원자재의 국산화

1973년 우리 나라의 총 수출액은 32억 5,600만 달러임에 대해 수입은 43억 2,000만 달러로 10억 6,4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나타냈다.

수입구조를 보면 원자재가 전체 수입의 66.4%, 자본재가 27.8%, 소비재가 5.8%로, 수출의 증가와 함께 원자재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애써서 수출하여 해외의 원자재 생산업자들만 살찌게 하는 결과가 되고 있음에 유의하게 된다.

이리하여 수출외형의 증대에만 치중했던 초기의 정책 방향을 수정하여, 수출 가득률을 높여 국제 수지를 개선시키는 문제가 수출 1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외화가득의 증대는 고가의 제품을 더욱 많이 수출하는 것이지만, 수출품을 만드는데 소용되는 원재료를 수입품이 아닌 우리 것으로 대체하는 일이 지름길임을 새삼 인식하게 되면서 외국산 원자재의 수입을 제한하고 국산품 사용을 권장하게 되었다.

외국산에 버금가는 품질과 가격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동원되는데, 화섬관련 부분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산 원자재의 수입 제한

가) 국산 원자재의 조달이 가능하거나, 국산원자재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상공부 고시 제5064호 70.1.20) 조치 되었는데, 그 대상품목으로 아크릴섬유와 그 방적사,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와 장섬유, 나일론사의 70 데니어와 100 데니어가 지정되었다. 이것이 수출용 원자재 국산대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최초의 조치이다. 물론 이들 수입제한 품목이라도 국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한 품목 또는 규격일 때에는 자동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나) 유용내지 시장 유출로 말썽이 되었던 일부 화섬품목의 수출용 원자재 비축 분에 대한 수입이 상공부 고시 제5667호(70.11.2)로 제한 조치되었다(사전승인제).

다) 수출용 원자재 중 일부 지정된 품목을 수입할 때에는 수입담보금을 적립토록 조치되었는데(상공부 고시 제6175호 71.2.6) 품목과 적립률은 다음과 같다.

폴리에스테르 장 단섬유	- 담보적립률 20%
나일론사, 아크릴방적사등	- 담보적립률 10~20%
아크릴섬유, P/C원단	- 담보적립률 10%

그 뒤, 모든 원자재 수입의 10%의 수입담보금을 적립하도록 변경(재무부 고시 제394호 71.6.26)했으며, 다시 담보율을 인상하는 조치(상공부 고시 제 7452호 71.10.18)가 뒤따랐다.

	비축분	L/C분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및 장섬유(50데니어 이상)	30%	30%
아크릴 단섬유 및 그 방적사(38수 이하)	30%	20%
나일론 장섬유(40, 70, 100, 210 데니어)	30%	20%
폴리프로필렌 장섬유 및 단섬유(3 데니어 이상)	30%	20%

다시 ‘수출용 원자재 국산 촉진을 위한 수입제한 요령’ (상공부 고시 제 8080호 71.10.23)으로 P/C원단류와 편직물이 제한 받게 되고, 수입 승인을 받은 품목들도 담보금을 적립하도록 규제가 강화되었다.

2) 금융지원의 강화

가) 69.4.25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수출용 원자재 생산자금 융자 취급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제조 업체들은 원자재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71년도 예산에 재정자금 중 5,000만원이 국산 원자재 화섬부문 생산자금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원자재 공급실적에 대한 가득률 비율로 아크릴 2,300만원, 폴리에스테르사 1,500만원, 나일론사 800만원, P/C원단 400만원씩 나누어 융자 받았다.

나) 국산 원자재의 생산자금 지원 방안이 금융통화 운영위원회의 결의(71.3.4)를 거쳐, 국산 원자재를 공급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준비 생산자금조로 사전에 융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다) 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수입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도록 하여 국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국산 원자재 공급자 및 사용자에게 그 실적의 20%까지를 무신용장 인수도 조건(D/A)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3.4. 화섬산업 육성 지원정책

피폐한 국민의 생활개선을 위해 경제개발계획의 중점사업의 하나로 착수된 화학섬유 제조공업은, 기술집약적인 장치산업이란 성격상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자본축적의 여유가 없었던 우리의 현실로서는 외자(외자)를 도입하여 건설해야 했고, 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소규모의 초기수요를 상대로 하는 사업 착수였기 때문에 그 규모는 비스코스 레이온의 일산 15톤 공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산 2~7톤 규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의 진전에 의해 국민소득이 늘고,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강력하게 펼쳐짐에 따라서 화섬수요도 계속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보여갔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능력을 확대해 가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은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여건이 업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못되었으므로, 앞에서 보아왔듯이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인 지원 속에서 여러 부분의 계획사업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순조로운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이다. 화섬분야도 그 가운데 하나로서, 2차 5개년 계획이 만료되는 72년까지 앞에서 서술한 것 외의 주요 정부지원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3.4.1. 직물류세 조정

초기에 화학섬유류에 부과되던 물품세는 국내에서 화학섬유가 생산되기 전인 수입제품 위주의 고급 의류로 취급되던 때에 책정된 것으로서, 1969년 갑종 근로소득세의 인하에 따른 세수결함을 보전(補填)키 위해 사치성 물품인 귀금속, 고급가구, 승용차 등의 물품세를 인상시킴과 동시에 직물류세를 물품세에서 독립 신설할 때에 10-24%로 책정되었다.

국내에서 생산된지 일천(日淺)하면서도 질기고 값이 싸다는 특징 때문에 쉽게 저소득 일반 서민사회에 뿌리내린 대중의료(大衆衣料)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71년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3항 의거 2~8% 포인트 감면 조치하게 된다 <표 3.7>.

이 감면된 세금 해당 금액은 화섬수출로 해서 발생하는 결손을 보상하기 위해 업계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적립되어 유익하게 활용되었다.

<표 3.7> 직물류 세율 감면내용

과 세 물 품		직물류세율	감면율	실과세율	비고
화섬사	인건사	12%	2%	10%	

	합섬사	24%	8%	16%	
타이어	사	12%		12%	
코드사	수입하는 사	24%		24%	
화섬사	재생섬유	10%		10%	
	기타 섬유	20%	4%	16%	
모사와 모	소모사 및 직물	30%	5%	25%	
직물	방모사 및 직물	20%	8%	12%	
용단		40%		40%	
수입하는 메리야스, 레이스 등		40%		40%	
면사	40'이상	10%		10%	
	40'이하	24%	8%	16%	
마사		12%	2%	10%	
생사와 견사		20%		20%	

3.4.2. 감가상각 단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이 나타나게 되면 그 때마다 그 사업에 알맞은 내용년수를 산정하여 상각을 마치게 함으로써, 기업경영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수단의 하나로 이용되어 왔다.

국제적으로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이 눈부시게 이루어짐으로써 고성능 신에 기계가 끊임없이 앞을 다투어 등장하고, 각 생산현장은 이를 채용, 구설비(舊設備)를 개체하여 더욱 질 좋은 제품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시설개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감가상각 연수를 계속 줄이는 형편이다. 선진국에서는 화학섬유 제조업과 같은 고성능 섬유시설에 대해서는 가속상각제도(加速償却制度)까지 도입하는 예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60년대 우리 나라의 현실은 개발계획에 의해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산업들이 여러 가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이나 제도의 정비가 이에 미치지 못해 이들 신규사업들을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했다.

일제법령을 일부 수정하여 만들어진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에는 “화학섬유 제조업 및 동 신축가공사 제조업”과 같은 업종은 계기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년수표의 “제 101호 기타”의 업종으로 간주되어 20년을 적용 받아야 했다.

이러한 모순이 업계의 건의로 1968년 3월 27일 재무부령 제 515호 법원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해 <표 3.8>과 같이 바로 잡혀지게 되었다.

<표 3.8>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갑)

일련번호	사업별	번호	용도별설비	내용연수
19	화학섬유제조업	1901	재생인조섬유 제조설비	8
		1902	반합성섬유 제조설비	8
		1903	합성섬유 제조설비	8
28	섬유 공업	2803	합성섬유 신축가공사 제조설비	12

3.4.3. 투자공제 대상업종 지정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상의 중요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1967년 11월 29일 투자공제제도를 보완하면서 화학섬유 제조업을 그 공제 대상업종으로 지정하게 된다. 1968년 이후 화학섬유 제조업이 급성장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4.4. 화섬시설 도입관세의 면세

화섬시설 도입관세는 관세법 제 28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령 제 520호로 “인조견사와 나일론사 및 인조섬유의 단섬유 제조시설”에 한하여 1968년 말까지 면세 조치되었다가, 품목간의 균형을 위해 재무부령 제 545호 (1968년 9월 23일)로 “인조견사 및 나일론사를 제외한 인조섬유 장섬유사 제조시설”로 개정되고 재무부령 제 772호, 제 783호 및 제 804호 (1970년 8월 31일)로 이어지면서 유효시한이 삭제되어 화학섬유 제조시설의 관세면세는 71년까지 계속되었다.

3.4.5. 어망 제조용 원료의 관세 감면

영세한 어민에게 값싼 어망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28조 및 재무부령 제 485호에 의거, 어망 제조용으로 수입되는 각종 섬유사의 관세는 면제되어 왔었다.

그러면서도 어망 제조용으로 쓰일 나일론의 주·부원료(主 副原料)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아 재무부령 제 783호 (1970년 5월 30일)로 어망사 제조용 카프를락탐에 대한 수입 관세가 면제 되었다.